

	진로체험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11
		제정일자	2016.03.01.
		개정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입학홍보협력처 (진로체험센터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진로체험을 위한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진로체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학과전공분야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
3. 삭제 <2023.05.01.>
4. 진로체험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
5. 삭제 <2023.05.01.>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사무직원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5.01.>
- ④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23.05.01.>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3.05.01.>

제6조 삭제 <2023.05.01.>

제7조 삭제 <2023.05.01.>

제8조 삭제 <2023.05.01.>

제9조 삭제 <2023.05.01.>

제10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보조금, 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 삭제 <2023.05.01.>

제12조(연구활동비)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(연구비, 조사비, 수당)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